

2018)소방시설관리사 1차 상, 하권 1차 정오표[2018.1.22]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=수정된 부분)						
2-20페이지 19번 문제 해설	$100 \text{ mAq} \times \frac{10.3325 \text{ N/cm}^2}{10.332 \text{ mAq}} = 98 \text{ N/cm}^2 \rightarrow 100 \text{ mAq} \times \frac{10.1325 \text{ N/cm}^2}{10.332 \text{ mAq}} = 98 \text{ N/cm}^2$						
2-135페이지 5번 문제 답	② → ①						
2-146페이지 ⑥ 청정소화약제의~	② 최대허용설계농도 <u>30%</u> 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가 가장 높다.						
3-9페이지 ② 영유아, 학생 등에~	<p>(1) 소방청장은 <u>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</u>  <u>(1-1)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</u></p> <p>(2) ~~~실시 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(3) 삭제</u></p>						
3-54페이지 ⑦ - (6)	<u>(관리업은 6개월)삭제</u>						
3-146페이지 13. ② 첫째줄	(1급 중 연면적 1만5천m <sup>2</sup> 미만 및 <u>2급, 3급</u> )						
3-170페이지 ⑦ - (3)의 ①, ②, ③ 내용변경	<p>① 작동기능점검(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) 및 종합정밀점검: 소방시설관리사와 보조기술인력</p> <p>②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(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외의 대상물)에 대한 작동기능점검: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보조기술인력</p> <p>* 소방안전관리대상물 -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</p>						
4-117페이지 19.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치명령등의 권한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<u>소방청장</u>(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),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u>소방청장</u>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조치명령등의 권한자		<u>소방청장</u> (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),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		<u>소방청장</u> 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	
조치명령등의 권한자							
<u>소방청장</u> (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), 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							
<u>소방청장</u> 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							
5-147페이지 ⑤의 표	<p>충전비와 관련된 내용 삭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body> <tr> <td>질소등의 비활성기체</td> <td>6.0~</td> </tr> <tr> <td><u>충전비</u></td> <td><u>1.5 이상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질소등의 비활성기체	6.0~	<u>충전비</u>	<u>1.5 이상</u>		
질소등의 비활성기체	6.0~						
<u>충전비</u>	<u>1.5 이상</u>						
5-170페이지 ⑥의 (3) 표 5-175페이지 10번 문제 해설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소 화 약 제</th> <th>최대허용 설계농도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HFC-23</td> <td><u>30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소 화 약 제	최대허용 설계농도(%)	HFC-23	<u>30</u>		
소 화 약 제	최대허용 설계농도(%)						
HFC-23	<u>30</u>						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=수정된 부분)		
5-284페이지 PART3. 2 - (1)의 표	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	-	구조대 · 피난사다리 · 미끄럼대 · 완강기 · <u>다수인피난장비</u> · <u>승강식피난기</u>
5-319페이지 4 - (3)	-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<u>0.15 Mpa 이상</u>		
5-368페이지 4. 2 송수구 설치기준 (제4조) 내용 변경	<p>송수구 설치기준 (제4조) (1)~(10)까지 삭제</p> <p><b>송수구 설치기준 (제4조)</b></p> <p>(1) 송수구에는 이물질이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.</p> <p>(2)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.5 m 이상 1 m 이하</p> <p>(3) 송수구는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설치 다만,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 가능</p> <p>(4)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, 스프링클러 · 물분무 · 포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시 제외</p> <p>(5) 송수구의 부근에는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(선택밸브를 설치 시 제외)</p> <p>(6)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 설치기준</p> <p>①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· 자동배수밸브 ·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</p> <p>②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·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</p> <p>③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,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</p> <p>(7)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. ※ 가연성가스의 저장 ·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.5 m 이상 폭 2.5 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</p> <p>(8)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</p> <p>(9)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 다만,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제외</p>		
6-88페이지 106번 보기	• <u>전역</u> 방출방식의 표면화재 방호대상물		
6-168페이지 48번 답	④ → <u>③</u>		
6-171페이지 57번 지문 ①, ②, ③, ④에서	총리령 → <u>행정안전부령</u>		
6-173페이지 61번 문제 해설	(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) → ( <u>행정안전부령</u> 으로 정하는 기간)		
6-199페이지 29번 해설	$V = \frac{4Q}{\pi D^2} \text{이므로}$ $V_2 = \frac{4 \times 0.3}{3 \times 0.1^2} = 40 \text{ m/s}$ $V_1 = \frac{4 \times 0.3}{3 \times 0.2^2} = 10 \text{ m/s}$		
6-206페이지 55번 지문①	① 호스릴 방식의 ~		

해당 페이지	정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
6-208페이지 63번 문제 지문③	③ 소방안전관리자를 선 <u>입</u> 하여야 하는 ~

